

20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

유형	지원 요건
시차출퇴근제	1)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)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할 것 3) 시차출퇴근일에 출근(퇴근)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(퇴근)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* 지원금 신청 시 전자,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* 시차출퇴근제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5)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*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
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	1)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) 재택·원격근무일에 출근(퇴근)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(퇴근)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*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(단,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,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) * 재택·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)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*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
선택근무제	1)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,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* 지원금 신청 시 전자,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*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,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)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3)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*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) 취업규칙(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규정할 것 5)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*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6)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*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

○ 공통사항

- (이행기간)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(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,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)
- (신청주기)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

- (지원금액) 1인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주 1~2일 사용 시 주당 5만원, 3일 이상 사용 시 주당 10만원(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)

- (지원한도) '20.12.31.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범위 내 최대 70명(시차출퇴근제는 30명), (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 지원)

특히,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(심사절차 간소화) 사업계획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심사

- (지원근로자 확대) 사업 참여신청 이전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, 신규 채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

* 단,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제외

- (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)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,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업무시작, 종료시각을 실시간으로 보고 방식의 근태관리도 허용

- (재택근무 승인 간소화) 임신부,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

* 임신·출산 사실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
- (신청서류) 참여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* 고용보험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

(기업회원 로그인 > 기업서비스 > 고용안정장려금 > 통합장려금(2017년 이후) > 고용안정장려금 > '계획신고서' 작성)